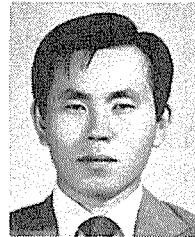


電子工業의 高度化와

振興法의 改正



朴 在 麟

本会 企劃課長

매년 40% 이상씩 成長해 왔다고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이 昨年에는 무려 13%나 마이너스 成長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原因에 대하여 우리 電子工業人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마치 단순한 不況인 것처럼 世界 經濟의 沈滯니, 국내 景氣의 전반적 不況이니 하여 때를 넘기고 나면 好況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던 80年代에는 우리나라 電子工業도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先進 電子工業國의 隊列에 들게 될 것이라고樂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統計에 나타난 事実은 그렇지가 않다. 즉, 3次 經濟開發計劃 기간 중에 우리나라 總輸出의 伸張率은 年平均 48%였으나 電子製品의 輸出伸張率은 이보다 훨씬 높은 63%였다. 그러던 것이 76年부터

시작된 4次 計劃 기간 중에는 總輸出의 伸張率이 23%로 多小 處화된 데 비하여 電子製品의 輸出伸張率은 그 絶對額 자체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17.9%에 그치고 있어 成長因子에 異狀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電子工業이 66年부터 괄목할 만한 成長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부터 裝備차일드를 비롯한 外國人企業의 對韓 進出이 시작되어 76年에 그것이 中斷되었다.

여기서 그들이 왜 国内에 進出을 하였으며 또 왜 중지하였는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나라 電子工業은 需要面에서 60年代에 先進國의 高賃金에 의한 經營 対策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른바 東南亞 新興

電子工業國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需要를 提供해 왔다는 점과 供給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良質의 労動力を 이용해 잘 적응해 왔을 뿐 아니라 政府의 강력한 輸出支援 政策으로 이를 더욱 高調시켜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분명해진 것은 成長의 主因子가 무엇이며 그것이 언제부터 機能이 減退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反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電子工業의 實像을 誇張, 過信하지는 않았는지? 勤勞의 決定, 先進國의 輸入規制 等 일련의 國際環境의 변화에 대해 主客을 轉倒시켜 本質의 문제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이제까지 成長의 主因子인 労動生產性의 변화에 대하여 企業과 政府에서는 얼마나 有效한 經營과 政策을 講究해 왔는

지?

電子工業이 아무리 우리나라
產業 事件에 理想的으로 부합
되는 產業일지라도 또 그 汲及
效果가 国家 전체에 대대하게
미치는 產業일지라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든 電子工業人이 마땅히 甘
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時點에서
지난 過去를 냉철히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電子工業의
再成長 기반을 構築하기 위한
새로운 転期를 마련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이것은 現世代의
우리 모든 電子工業人的 한결
같은 召命인 것이다.

비록 晚時之歎의 限이 있긴
하나 政府가 지난 4年13日 電
子工業에 있어서 마치 헌법과
도 같은 電子工業振興法을 改
正, 公布한 것은 바로 이러한
転期를 마련한다는 데 그意義
가 있다고 하겠다.

1. 電子工業의 高度化

電子工業 振興法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高度化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法의
目的에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電子工業을 高度化한다고 하여
美國을 비롯한 先進 電子工業
국을 바로 겨냥하여 短期間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解析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라는
時點과 우리나라라는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高度化라고 한 데 대해
서는 과거에 우리나라 電子工業이
低質의 勞動力を 바탕으
로한 量的 成長에 집착한 나
머지 質的 成長의 비중이 낮
았던 점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
로, 単純한 經濟的 外形成長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自主的
成長의 밑바탕이 되는 技術 水
準의 提高를 통하여 經濟의 附
加價值를 拡散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高
度化의 水準에 대해서는 法으
로 限定하지 않고 時宣 적합하
게 商工部長官이 公告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旧法体制에서
도 電子工業을 育成하기 위하
여 基本計劃을 수차에 걸쳐 公
告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와 본질적
으로 다른 것은 基本計劃이 주
로 우리나라가 未開發된 부문
을 대상으로 한 데 비하여 여
기서는 研究開發과 工業化, 合
理化 이렇게 나누어 進展시키
겠다는 것이 第3條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新開發도 중요하지만 현재
生産하고 있는 製品들에 대한
価格과 品質, 그리고 販売競爭
力を 어떻게 提高하여 研究開
發과 工業化에 의하여 新製品
으로 대체할 때까지 競爭力を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바로 이 合理化 부문의
課題라고 할 수 있다.

당면한 現實의 중요성에 비
추어 보아 어떻게 보면 과거의
基本計劃이 이 부분을 너무 가
볍게 본 느낌마저 없지 않다.
한편, 製品을 生산할 수 있는
技術은 自主的으로 研究를 한
것이든 또는 外國의 技術을 도
입한 것이든 확보되어 있으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 아직까지
工業生產이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量產性에 의한 규모의 經
濟利益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
야에 대한 工業化와 量產化的
촉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生
產技術의 확립 또는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해 研究開發을 촉진
해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
다. 또한 旧法이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促進方法도 일률적
으로 指定하는 方式을 택했던
것에 비하면 이 改正案에서 배
제된 것은 計劃의 확고한 의지
와 政策 수단의 機動性 그리고
品目의 特性을 배려한 데서 비
롯된 것 같다.

2. 高度化를 위한 課題

高度化 計劃이 政策의 方向
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政策 그 자체를 말하는 것
이다. 高度化 計劃 자체에서
政策의 誘發이 따르기 때문에
政策의 供給은 필연적인 것이
며 이것이 결합되지 않으면 무
의미한 計劃이 되거나 아니면
政策의 남발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이렇게 振興의 방향

과 計劃이 그를 위한 政策수단과 상호유리되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 그렇다고 하여 電子工業振興法에 구체적인 政策수단을 다 提示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現법이 모든 法律의 basic 方向만을 제시하듯이 振興法의 性格 자체가 教示的, 宣言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金融이나 稅制와 같은 구체적인 政策 수단을 규정하기에는 많은 制限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改正案에는 基金의 조성과 지원, 国產化와 海外 進出의 촉진, 그리고 広意의 政策 수단에서 行政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企業의 經營 차원에서의合理化措置 같은 것이 특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 基金의 조성, 支援은 產業 규모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旧法에서와 같이 財政 依存의 資金 支援 방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供給 측면에서의 理由요 需要 측면에서 보면 需要가 늘어감에 따라 資金의 소오스를 多源化시켜야 한다는 論理의 주장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점차 民間主導 振興体制로의 접근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国產化의 促進 條項에는 政府 또는 政府 投資機關이 電子機器 등을 輸入함에 있어서 国產化의 여부와 관련하여 미리 商工部長官의 意見을 듣

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앞으로 產業用機器의 開發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과 그 需要가 대부분 政府 또는 政府 投資 機關에서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된 것 같다.

물론 機械工業振興法에 이와 유사한 條項이 있기는 하나 機械의 需要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政策 의지로 그 施行방법과 함께 크게 주목되는 條項이다. 海外 進出의 촉진에 대해서는 先進국이 그러한 과정을 겪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技術과 市場의 확보, 또는 國內 產業 与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해외진출 촉진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를 촉진하기 위한 施策 강구를 改正된 振興法에는 義務로 하고 있다. 合理化의措置는 다소 硬直化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法의 목적과 관련해 볼 때 企業이 合理化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日本의 振興法에 그 表現方式은 다소 다르지만 既實은 같은 것은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좋은 方向으로의 역할이 오히려 기대되는 것이다.

3. 推進의 主體

최近에 우리 經濟社會에서는 民間主導의 經濟運用 체제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뜻이 상당히 많은 부문에 내포되어 있는데 韓國電子工業振興會를 이法에 의한 法定機關으로 하였다는 점과 振興會의 事業에 그것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振興會의 概念이 事務局機能이 아닌 우리나라 모든 電子工業 事業者들의 構成點이라는데 보다 큰 뜻이 있는 것 같다.

사실 電子工業은 經濟 規模 확대 이외에도 技術 수준의深化에 따라 그 專門性이 날로 강조되고 있어 여러가지의 측면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도 沈滯와 不況의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電子工業, 여기에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成長의 時代로進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 振興法의 改正是 電子工業의 새로운 成長時代로의 転期를 의미한다. 다만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최종적인 결과는 人間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電子工業의 高度化로 그 構成點인 우리 電子工業人이 어떻게 이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成敗가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해 두고 싶다.